

근 질 권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예적금융·동산용·유가증권용)

본인확인자	팀 원	팀 장	부점장

은행은 근질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선 표시란(당사자란, 제1조, 제9조 및 계약서 끝부분) 및 음영 표시란은 근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앞

년 월 일

1. 근질권설정자는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을 채권자겸 근질권자로 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2. 근질권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가계용)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채무자
(겸 근질권설정자)
주 소

근질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
주 소

제1조 근질권의 설정·연대보증

- ①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채권·동산·증권 등 (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질권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질권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질권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은행과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은행이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2. 담보한도액 金 원

3. 근질권 결산기
- 은행은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지정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② 연대보증인(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로서 제1항 제1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질권으로 정한 자에 한합니다)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보증채무의 범위는 제1항 제2호 담보한도액의 범위내로 제한됩니다)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 ①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수익·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종별변경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 설정자는 은행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③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황광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 ①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은행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은행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 ② 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은행에게 통지하여 은행이 채권보전에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도, 은행은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기로 하되, 연대보증인이 담보제공한 예·적금, 신탁, 기타 채권에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에는,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피담보채무를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대보증인이 담보제공한 예·적금, 신탁, 기타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상계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비용부담

은행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제7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8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행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은행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특약사항

	설 정 자	(인)
--	-------	-----

■ 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신탁 등의 목록(예·적금용) (단위 : 원)

종별	계좌번호·증서번호	명의인(위탁자)수익자	계약금액	. . .까지 입금누계액	신규일	만기일

※ 본란은 담보제공자가 직접 기재하고, 신탁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위탁자를 ()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목적물 목록(동산용·지명채권용·유가증권용)

주)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 지명채권,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적으십시오.

담보제공자(근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 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근 질 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근질권**」이란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채취금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근질권**」이란 특정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금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근질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질권을 선택할 경우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한 후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